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506306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5. 11. 19.

판결 선고 2016.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6,053,884원 및 그 중 35,760,070원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2.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7.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5,76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은 36,053,884원 및 그 중 35,760,070원에 대하여 2011. 9.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5,76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 D, 피고 A, 피고 B의 공동범행

○ D은 2010. 1. 초순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피고 A을 만나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및 허위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 C은 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D은 그 무렵 사실은 피고 A이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A을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 피고 B은 C으로부터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B, 피고 A, C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5,500만원, 임대인 B,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그 후 성명불상자가 2010. 1. 중순경 피고 A을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타운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 A은 위 은행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8,000,000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E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 B은 소외 은행에게 위와 같은 전세계약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외 은행의 임대차계약 사실 조사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해 주었다.

○ 이와 같이 C, D, 피고 B, 피고 A은 공모하여 위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한다)을 기망하여 2010. 1. 2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38,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 B은 위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05호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 소외 은행은 원고의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수탁기관 및 대출은행으로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받는데 이어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2010. 1. 22. 피보증인 피고 A,보증원금 34,200,000원, 보증기한 2012. 1. 29.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29. 피고 A에게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손해금 및 기타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 그 후 피고 A은 2010. 12. 23.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피고 A의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한 보증이행을 청구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1. 9. 7. 소외 은행에게 35,814,4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원고는 2012. 9.

12. 피고 A으로부터 54,340원을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35,760,070원이 되었고, 그 외에 채권보전비용으로 285,530원, 확정 지연손해금 8,284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잔액, 채권보전비용, 확정 지연손해금의 합계 36,053,884원(= 35,760,070원 + 285,530원 + 8,2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5,760,070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1. 9. 8.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대위변제금 35,760,0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1.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5. 7. 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은, 피해자인 원고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주장처럼 피고 A이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무렵(2010. 12. 23.경) 또는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무렵(2011. 9. 7.경)에 원고가 피고들의 위 공동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원고가 위 공동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실상계 주장

피고 B은, 자신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원고 및 소외 은행이 위 대출과정에서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책임액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C, D, 피고 A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피고 B은, 원고가 과실에 의한 방조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장 및 원고의 2015. 10. 22.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피고 B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을 나누어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부주의 가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게 되면 피고들이나 공범들로 하여금 그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